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8 선고 2018가단50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65002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8 선고 2018가단50555 판결

전 문

원고A종친회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변론 종결 2018. 4. 24.

판결 선고 2018.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2017.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6. 7. 접수 제240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자6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14. 5. 28. D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6.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D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C은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지도 않고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자신이 이 사건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F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6325 사건), 위 사건에 대해 위 법원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나1899호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4다855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임성철